

의안번호	제 59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임영은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0년 11월 20일

#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영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9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11월 20일

발 의 자 : 임영은, 이옥규, 박상돈,  
심기보, 오영탁, 육미선,  
이수완

## 1. 개정이유

- 국가 차원의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 시·도에서 시·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「문화재보호법」이 개정(법률 제16057호, 2018.12.24. 공포, 2019.12.25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도등록문화재 추가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19조, 제26조, 제27조, 제28조, 제29조, 제30조, 제33조, 제34조, 제35조, 제40조, 제45조, 제46조, 제47조, 제54조, 제55조, 제57조, 제58조, 제61조, 제62조, 제63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재보호법」
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입법예고 : 2020. 11. 13. ~ 2020. 11. 18.

##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”을 “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, ”로, “지정문화재”를 “지정문화재, 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”를 “법 제53조와 제 7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도지사가”로 한다.

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호, 제5호 및 제8호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각각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### 3. 충청북도 등록문화재(이하 “도등록문화재”라 한다)의 등록과 말소

제19조제1항 중 “도지정문화재및”을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문화재 및 도등록문화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문화재”로, “포함한다)”를 “포함한다), 도등록문화재와 문화재자료”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 및 문화재자료”로 한다.

제26조의 제목 “(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)”을 “(지정 또는 등록에 관한 자

료 제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지정”을 “지정 또는 등록”으로 한다.

제27조의 제목 “(지정 고시 및 통지)”를 “(지정 또는 등록 고시 및 통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2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, “지정할”을 “지정 또는 등록할”로 한다.

제28조의 제목 “(지정서의 교부)”를 “(지정서 또는 등록증의 교부)”로 하고,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28조(지정서 또는 등록증의 교부)** 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. 이 경우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.

제29조의 제목 “(지정의 효력발생 시기)”를 “(지정 또는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정”을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또는 등록”으로, “지정을”을 “지정 또는 등록을”로 한다.

제30조의 제목 “(지정의 해제)”를 “(지정의 해제 또는 등록의 말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, “해제”를 “해제 또는 등록을 말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해제에”를 “해제 또는 등록의 말소에”로, “해제 및”을 “해제, 말소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등록문화재와”로, “지정서를”을 “지정서 또는 등록증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, “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”을 “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

정 또는 등록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각각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”로, 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”을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도지정문화재·문화재자료”를 각각 “도지정문화재·도등록문화재·문화재자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1호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각각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, 같은 호 중 “지정 또는”을 “지정, 등록 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각각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2호, 제4호 및 제6호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각각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각각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제46조제1항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지정문화재 또는”을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 또는”으로, “도지정문화재의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”로 한다.

제47조제1항 본문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제54조제1항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제55조제1항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제5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각각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3. 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그 말소

제58조제1항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제61조제1항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제62조제1호 중 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된”을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 또는 등록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문화재자료”를 “도등록문화재, 문화재자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제63조제2호 및 제3호 중 “도지정문화재”를 각각 “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재 보호법」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소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·활용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<u>지정문화재</u>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 절차, 관리, 보호·육성, 공개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등록문화재: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<u>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</u>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.</p> <p>7. (생략)</p> <p>제4조(기능) (생략)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재 보호법」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소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·활용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<u>지정문화재, 등록문화재</u>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 절차, 관리, 보호·육성, 공개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등록문화재: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<u>법 제53조와 제7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도지사가</u>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.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충청북도 등록문화재(이하 "도등록문화재"라 한다)의 등</u></p>



현행	개정안
<p>4. <u>도지정문화재</u>와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</p> <p>5. <u>도지정문화재</u>와 문화재자료의 <u>현상변경 허가</u></p> <p>6.~7. (생략)</p> <p>8. <u>도지정문화재</u>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·관리와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p> <p>9.~10. (생략)</p> <p>제19조(화재예방 및 재난방지 등) ① 도지사나 시장·군수는 <u>도지정문화재</u> 및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화재 및 재난방지,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 대응 지침서(이하 “지침서”라 한다)를 마련하고 이를 <u>도지정문화</u></p>	<p><u>록과 말소</u></p> <p>4. <u>도지정문화재</u>, <u>도등록문화재</u>와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</p> <p>5. <u>도지정문화재</u>, <u>도등록문화재</u>와 문화재자료의 <u>현상변경 허가</u></p> <p>6.~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도지정문화재</u>, <u>도등록문화재</u>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·관리와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p> <p>9.~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화재예방 및 재난방지 등) ① 도지사나 시장·군수는 <u>도지정문화재</u>, <u>도등록문화재</u> 및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화재 및 재난방지,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 대응 지침서(이하 “지침서”라 한다)를 마련하고 이를 <u>도지정문화재</u>, <u>도등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재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/p>	<p><u>록문화재</u>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④ <u>도지정문화재</u>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도난방지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④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도난방지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<p>⑤ (생략)</p>	<p>⑤ (생략)</p>
<p>제19조의2(문화재 금연구역의 지정)① (생략)</p>	<p>제19조의2(문화재 금연구역의 지정)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1. <u>도지정문화재</u> 및 문화재자료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(주거용 시설은 제외한다)</p>	<p>1.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및 문화재자료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(주거용 시설은 제외한다)</p>
<p>2. (생략)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3. 그 밖에 <u>지정문화재</u>(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) 중 소유자, 관리</p>	<p>3. 그 밖에 <u>도지정문화재</u>(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), <u>도등록문화재</u>와</p>

현행	개정안
<p>자 및 관리단체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지역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제4장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</u></p> <p><u>제26조(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)</u> 시장·군수는 <u>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사진, 도면과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27조(지정 고시 및 통지) ①</u> <u>제2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(보호물과 보호구역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,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제28조(지정서의 교부) ①</u> <u>제2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또는</u></p>	<p><u>문화재자료 중</u>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지역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4장 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 및 문화재자료</u></p> <p><u>제26조(지정 또는 등록에 관한 자료 제출)</u> 시장·군수는 <u>지정 또는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사진, 도면과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27조(지정 또는 등록 고시 및 통지) ①</u>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와 문화재자료(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지정 또는 등록할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,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28조(지정서 또는 등록증의 교부)</u>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문화재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. 이 경우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2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.</u></p> <p><u>제29조(지정의 효력발생 시기)</u>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정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,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도보가 발행되어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</p> <p><u>제30조(지정의 해제)</u> ① 도지사는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가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</p>	<p><u>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 또는 등록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. 이 경우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29조(지정 또는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)</u>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또는 등록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등록을 통지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,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도보가 발행되어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</u></p> <p><u>제30조(지정의 해제 또는 등록의 말소)</u> ① 도지사는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가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</p>

현행	개정안
<p>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<u>해제</u>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 삭제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정의 <u>해제</u>에 관한 고시, 통지, <u>해제</u>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다.</p> <p>⑥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7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<u>지정서</u>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</p> <p>⑦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가 <u>국가지정문화재</u>로 지정된 때에는 <u>국가지정문화재</u>로 지정된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33조(소유자 관리의 원칙) ①</p>	<p>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<u>해제 또는 등록을 말소</u>할 수 있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제1항에 따른 문화재 <u>지정</u>의 <u>해제</u> 또는 <u>등록</u>의 <u>말소</u>에 관한 고시, 통지, <u>해제</u>, <u>말소</u>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다.</p> <p>⑥ <u>도지정문화재</u>, <u>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7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<u>지정서</u> 또는 <u>등록증</u>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</p> <p>⑦ <u>도지정문화재</u>, <u>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가 <u>국가지정문화재</u> 또는 <u>국가등록문화재</u>로 지정 또는 등록된 때에는 <u>국가지정문화재</u> 또는 <u>국가등록문화재</u>로 지정 또는 등록된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33조(소유자 관리의 원칙) ①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<u>문화재자료</u>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해당 문화재를 관리·보호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<u>문화재자료</u>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·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.</p> <p>제34조(관리단체에 의한 관리)</p> <p>① 도지사는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<u>문화재자료</u>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·군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관리단체”라 한다)를 지정하여 해당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<u>문화재자료</u>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시·군 등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<u>도지정문화재·문화재자료</u>의 소유자·관리자와 해</p>	<p><u>도지정문화재</u>, <u>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<u>문화재자료</u>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해당 문화재를 관리·보호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도지정문화재</u>, <u>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<u>문화재자료</u>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·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.</p> <p>제34조(관리단체에 의한 관리)</p> <p>① 도지사는 <u>도지정문화재</u>, <u>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<u>문화재자료</u>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·군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관리단체”라 한다)를 지정하여 해당 <u>도지정문화재</u>, <u>도등록문화재</u>와 <u>문화재자료</u>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시·군 등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<u>도지정문화재·도등록문화재·문화재자료</u>의 소유</p>

현행	개정안
<p>당 시·군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</p> <p>④ <u>도지정문화재·문화재자료</u>의 소유자·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⑤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나 시장·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.</p> <p>⑥ (생략)</p> <p>제35조(허가사항)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1. <u>도지정문화재</u> 및 문화재자료로 <u>지정</u> 또는 <u>가지정된</u>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·식물·광물을 포획·</p>	<p>자·관리자와 해당 시·군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</p> <p>④ <u>도지정문화재·도등록문화재·문화재자료</u>의 소유자·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⑤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나 시장·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.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5조(허가사항)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1.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및 문화재자료로 <u>지정, 등록</u> 또는 <u>가지정된</u>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·식물·</p>

현행	개정안
<p>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</p> <p>2.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 자료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</p> <p>3.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 자료(보호물·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)의 현상을 변경(기념물을 표본, 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)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</p>	<p>광물을 포획·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</p> <p>2. <u>도지정문화재</u> , <u>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 자료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</p> <p>3. <u>도지정문화재</u>, <u>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 자료(보호물·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)의 현상을 변경(기념물을 표본, 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)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</p>
<p><b>제40조(신고 사항)</b>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 자료(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, 제2호의 경우에는 신·구 소</p>	<p><b>제40조(신고 사항)</b> <u>도지정문화재</u>, <u>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 자료(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, 제2호의 경우</p>



현행	개정안
<p>유자가 각각 연서(連署)로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 자료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</li> <li>3. (생략)</li> <li>4.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 자료의 소재지의 지명·지번·지목·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</li> <li>5. (생략)</li> <li>6.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 자료가 멸실·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</li> <li>7.~9. (생략)</li> </ol> <p>제45조(행정명령) ① 도지사는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(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·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 자료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</li> </ol>	<p>에는 신·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(連署)로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의 지명·지번·지목·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</li> <li>5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6.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가 멸실·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</li> <li>7.~9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제45조(행정명령) ① 도지사는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(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·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관리상황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>재의 보존에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</p> <p>2.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 자료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,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</p> <p>3.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 자료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관한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</p> <p>4. 제35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제46조(기록의 작성·보존) ① 도</p>	<p>이 그 문화재의 보존에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</p> <p>2.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,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</p> <p>3.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관한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</p> <p>4. 제35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6조(기록의 작성·보존) ① 도</p>

현행	개정안
<p>지사와 해당 시장·군수 및 관리단체의 장은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보존·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존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에 <u>도지정문화재</u>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47조(수리 등) ①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(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)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·문화재수리기능자나 문화재수리업자(이하 “문화재수리기술자 등”이라 한다)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</p>	<p>지사와 해당 시장·군수 및 관리단체의 장은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보존·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존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에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와 문화재자료</u>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47조(수리 등) ①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(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)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·문화재수리기능자나 문화재수리업자(이하 “문화재수리기술자 등”이라 한다)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</p>

현행	개정안
<p>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4조(도지정문화재의 공개 등)</p> <p>①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(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(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,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고시하고,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알려야 한다.</p>	<p>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4조(도지정문화재의 공개 등)</p> <p>①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(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,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고시하고,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알려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④~⑤ (생략)</p> <p>제55조(관람료의 징수) ①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·보유자나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7조(정기조사) ① 도지사는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, 관리, 수리, 전승(傳承)의 실태,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해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~⑥ (생략)</p> <p>⑦ (생략)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<u>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과 그 해제</u></p> <p>4.~6. (생략)</p>	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5조(관람료의 징수) ①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·보유자나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7조(정기조사) ① 도지사는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, 관리, 수리, 전승(傳承)의 실태,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해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그 말소</u></p> <p>4.~6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8조(직권에 의한 조사)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<u>도지정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, 관리, 수리, 전승실태,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8조(직권에 의한 조사)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</u>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, 관리, 수리, 전승실태,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1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① <u>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</u>(보호물,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)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하는 명령·지시·기타 처분 등에 대하여 권리 변동이 있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소유자의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1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①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나 문화재자료</u>(보호물,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)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하는 명령·지시·기타 처분 등에 대하여 권리 변동이 있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소유자의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2조(표창)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발견·신고한 매장문화재가 <u>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</u>로 지정된 경우에 매장 문화재를 발견·신고한 자</li> <li>관리·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</li> </ol>	<p>제62조(표창)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발견·신고한 매장문화재가 <u>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나 문화재자료</u>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매장 문화재를 발견·신고한 자</li> <li>관리·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>로서 도지정문화재, <u>문화재자료</u> 또는 <u>가지정문화재</u>의 멸실, 도난,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</p> <p>3. 삭제</p> <p>4. <u>도지정문화재</u>, <u>문화재자료</u> 또는 <u>가지정문화재</u>를 관리, 보호,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, 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</p> <p>5.~6. (생략)</p> <p>제63조(권한의 위임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45조에 따른 <u>도지정문화재</u> 및 <u>문화재자료</u>의 소유자, 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 명령 및 조치</p> <p>3. 제47조에 따른 <u>도지정문화재</u> 및 <u>문화재자료</u>의 경미한 수리</p>	<p>로서 도지정문화재, <u>도등록문화재</u>, <u>문화재자료</u> 또는 <u>가지정문화재</u>의 멸실, 도난,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</p> <p>4. <u>도지정문화재</u>, <u>도등록문화재</u>, <u>문화재자료</u> 또는 <u>가지정문화재</u>를 관리, 보호,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, 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</p> <p>5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3조(권한의 위임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제45조에 따른 <u>도지정문화재</u>, <u>도등록문화재</u> 및 <u>문화재자료</u>의 소유자, 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 명령 및 조치</p> <p>3. 제47조에 따른 <u>도지정문화재</u>, <u>도등록문화재</u> 및 <u>문화재자료</u>의 경미한 수리</p>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문화재보호법

#### 제70조(시·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·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)

- ① 시·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·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, 기념물(제2조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)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.
-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시·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(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지정·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,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·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"지정" 또는 "등록" 앞에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⑥ 시·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, 시·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, 시·도지정문화재, 문화재자료 및 시·도등록문화재의 관리, 보호·육성,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

## 70조의2(시·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)

- ① 시·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.
  1.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
  2.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
  3.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,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-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·도지사는 시·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### 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